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. 10. 19 선고 2021가단128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0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C 전 271㎡에 관하여 2003. 9. 2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

판사 편병호

별지